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송 경 훈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1. 서론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국가기간전력망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총 6개장 33개조로 외관상으로는 간단한 법률이지만 그 의미나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만 국가기간 전력망과 관련된 법률안이 13건 발의되었고, 현재의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공포된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 대부분의 대안으로 소관 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표 1 국가기간 전력망 관련 법률안 현황

순번	의안명	대표발의	진행상태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한규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진욱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이상식 의원	대안반영폐기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석기 의원	대안반영폐기
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미애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원택 의원	소관위심사
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안호영 의원	소관위접수
1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공포

주: 순서는 제안일자 기준임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5. 7. 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저자는 본고를 통해 시행을 앞둔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력산업과 관련한 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법의 제정 경과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그 제목 그대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로서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3)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중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국가기간전력망법 제2조).

전력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국전력공사가 수립하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 3월 13일에 수립되었고, 이와 관련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도 같은 해 5월 수립되었다. 전력망 관련 계획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전력망 설비를 위와 같이 제한적 범위로 정의한 것은, 국가기간전력망법이 기본적으로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라는 중대한 목표 하에 특히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오래된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



표 2 전력망 관련 계획

순번	계획명	수립주체	주기	진행상태
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국가기본계획’)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년 계획기간 5년 단위	제10조
2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시·도계획’)	시·도지사	10년 계획기간 5년 단위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
3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시·군·구계획’)	시장·군수·구청장	10년 계획기간 5년 단위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신재생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계획기간 5년 단위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
5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년 단위	전기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6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한국전력공사	2년 단위	전기사업법 제25조, 제27조
7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이하 ‘분산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년 계획기간 5년 단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
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년 단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5. 7.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된 전기에 국한하지 않고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포함하고,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까지 특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 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 접속 지연과 전력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국가기간전력망법을 탄생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출력제한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이를 해소할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망 확충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범부처 차원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한 협력이 필요한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도 길다. 나아가 송변전설비의 설치지역과 수혜지역이 달라 지역 간 이해관계 갈등의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전자파 발생, 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인한 지역사회의 낮은 주민수용성 등이 문제되어 주요 전력망 사업들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3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 (1)

구분	전체	정상진행	지연	준공지연사유			
				민원	인허가	시공여건	고객사유
건수	31건	19건	12건	5건	4건	2건	1건

자료: 한국전력공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5. 7. 2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검토보고(2025. 2.)’

표 4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 (2)

사업명	지자체	지연사유	지연기간
500kV 동해안-수도권	횡성군 홍천군 하남시	입지선정 지연, 인허가 불허	66개월
345kV 북당진-신당정	당진시	입지선정 지연, 인허가 불허	150개월
345kV 당진TP-신송산	당진시	입지선정 지연, 인허가 비협조	90개월
345kV 신시흥-신송도	시흥시	변전소 확장 지연 지반 침하 우려에 노선 변경 요구	66개월
345kV 신장성S/S	장성군	변전소 위치 변경, 인허가 비협조	77개월

자료: 한국전력공사, 뉴스핌 2024. 11. 22.자 기사 “‘전력망 특별법’ 통과 청신호 ... 주민보상 늘리고 건설기간 빨라진다.”(검색일 2025. 7. 17)

이러한 복잡한 배경하에 결국 대안을 통해 구체화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5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제정이유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5. 7. 18.)



3. 국가기간 전력망법의 주요 내용

국가기간전력망법의 핵심은 (1)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2)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며, (3) 국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4) 국가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주요내용

분류	주요내용	관련조항
목적	- (1)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2)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 →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	제1조
정의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 · 변전설비, (2)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 · 변전설비	제2조
특별법 지위	- 다른 법률에 국가기간전력망법보다 완화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이 적용됨	제5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 정부는 5년마다 30년 단위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국가기간전력망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장기 계획 수립 시 (1) 전력망 확충의 정책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자원조달, 투자방향,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2) 공청회,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 - 다른 계획은 국가기간전력망기본계획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함	제6조 제7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 신설 - 전력망위원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지정, 입지선정, 갈등 · 분쟁 조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심의 · 의결함 -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제8조 제9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시 개별 법률상의 별도 인허가, 고시 및 공고를 간주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의 적용 특례 - 부대공사(임시도로, 작업장 등) 관련 신속 처리 특례	제11조 내지 제17조

분류	주요내용	관련조항
지원 · 보상 특례	송전 · 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확대 -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또는 사용 시 보상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 가능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가능 -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가능	제20조 내지 제24조
국가 지원	개발사업 비용의 국가지원 가능	제25조
전력 우선공급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 노력	제27조
보안 및 벌칙	관계자는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제26조 제32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5. 7. 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국가기간 전력망법의 시사점

가. 인허가 및 간소화 특례로 인한 전력망 확충 활성화 가능성

국가기간전력망법의 핵심은 무엇보다 인허가 및 간소화 특례에 있다. 전력망 확충은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도 매우 다양하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인허가로 인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사업도 많았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시 개별 법률상의 별도 인허가, 고시 및 공고를 간주하고(제13조 제1항), (2)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14조), (3)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 적용 특례를 두고(제15조, 제16조), (4) 그간 실무상 자연사유 중 하나로 줄곧 지적되었던 부대공사(임시도로, 작업장 등) 관련 신속 처리 특례도 두었다(제17조).

이들 특례는 분명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나. 지원·보상 특례로 인한 갈등 해소 가능성

전력망 확충 지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주민수용성 문제다. 송변전설비가 내집, 내땅을 지난다는 데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이를 경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국가기간 전력망법은 (1)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또는 사용 시 보상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고(제21조 제1항), (2)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21조 제3항),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제22조).

이를 통해 그간 경제적 문제로 해소되지 못했던 갈등이 이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박지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

그림 1 국가기간전력망법 상임위 회의록 일부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오늘 통과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해서 아마 저희 산자중기 위원들께서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법의 형태로 지금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력망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법안 통과하는 데 협조를 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안에는 보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 의제도 대폭 확대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듣고 이 사업들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또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산자부에서 그런 점을 좀 잘 반영하셔서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견 수렴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 수렴을 잘해 가면서 마련해 주시기를,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긴 하지만 미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5. 7. 21.) '제422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2025. 2. 19.)'

력망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환경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얹혀 있으므로, 향후 국가기간전력망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그 시행 과정에서의 추이를 일단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다. 지원 근거 마련으로 인한 국가 주도 전력망 확충 가능성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주목할 다른 이유는 국가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은 법률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르면 국가는 (1)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25조),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제24조).

그림 2 국가기간전력망법 기재부 수정의견

제 정 안	기획재정부 수정의견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u>국가 또는 사업시행자</u> 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u>사업시행자</u> 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는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u>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5. 7. 1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검토보고'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지출 법안에 항상 따라오는 기획재정부의 수정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종래의 대안 그대로 공포되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 설비 확충은 역부족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망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국가기간전력망법의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결론 및 제언

국가기간전력망법과 함께 이른바 ‘에너지3법’으로 불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국가기간전력망법과 동일하게 2025년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된다. 특히 해상풍력법의 경우 기후에너지와 관련 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예고한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3법의 하위법령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또 어떤 법률이 추가로 제정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호, 2025. 2. 26.
- 국회사무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호, 2025. 2. 19.
-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5. 3. 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5.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5. 2.
- 한국전력공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2025. 5.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s://www.motie.go.kr/>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2050cnc.go.kr/base/main/view>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s://www.kepco.co.kr/home/index.do>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https://www.kpx.or.kr/main/>